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57

발의연월일: 2022. 12. 5.

발 의 자:양정숙·강병원·고영인

김남국 • 김종민 • 민형배

박완주 · 심상정 · 윤미향

윤준병 • 이상헌 • 이원욱

한병도 • 홍기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일정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난관리 선진국의 경우 재난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대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재난관리 기금의 우선적 사용 용도에 재난의 사후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 난 예방대책에 대한 기금 사용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기금의 우선적 사용 용도에 재난 예방활동을 포함하 도록 하여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응급복구"를 "재난의 예방활동, 응급복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②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u>응급</u>	<u>재난</u>
<u>복구</u>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	의 예방활동, 응급복구
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